

「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8.22(목) 유인환의원외 2
- 나. 회부일자 : 2013. 9. 1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3. 9. 10(화)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유인환 의원)

-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13.6.11, 대통령령 제24593호)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“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”내용을 반영하고
-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행위제한(3층)을 삭제하는 내용으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6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1호 중 “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”을 “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”으로 한다.

별표 19 제13호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(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”를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